

검 토 보 고 서

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민원여권과

2.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산정보과

(2011. 10. 1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3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10월 4일

4. 근거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제7조

(법률 제10012호)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제17조 제1항

(대통령령 제20707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동 조례안은 2010. 2.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012호」로 타법 개정되어 2010. 5. 5일 시행되고 2008. 2. 29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70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2. 2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 요 >

- 동 조례안은 전문 제5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정보공개의 원칙,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2장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다른 제도와와의 관계 등 보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 (1) 안 제5조(구청장의 의무)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도록 하고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2) 안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에서는 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4개호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공표제도를 마련하였고,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명시
- (3) 안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원활한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4) 안 제11조(심의회 기능)에서는 구청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사항,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5) 안 제12조(심의회의 운영)에서 회의의 소집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6)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 (7) 안 부칙 제2항(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였고 심의회 위원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함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변화와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한 우리 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정보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